

보도일시	<b>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</b>			
배포일시	2014. 12. 22.(월)	담당부서	관세청 특수통관과	
담당과장	이철재 (042-481-7830) (010-7167-3176)	담당자	김동이 (042-481-7831) (010-3891-2203)	

##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 - '15.1.1.부터 가산세율 30%에서 40%로 인상 -

-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  -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30%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, 내년 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%가 가산세로 부과된다.
  -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 상향(미화 400달러 → 600달러)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.
-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(2년내 2회 이상)에게 납부할 세액의 60%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(重課) 규정\* 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%를 경감해주는 규정\*\*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.
  - \*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
  - \*\*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
-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.

[참고자료 1] 휴대품 자진신고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

[사례 1] 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\* 선물 구입

\* 술, 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

○ 자진신고시 세부담 : 61,600원

- 산출세액 =  $(1,000\$ - 600\$) \times 20\% (\text{간이세율}) \times 1,100 (\text{환율}) = 88,000$
- 공제액 =  $88,000 \times 30\% = 26,400 (\text{공제액}) < 150,000$
- 공제후 세부담 =  $88,000 - 26,400 = 61,600$

○ 미신고후 적발시 세부담 : 123,200원

- 가산세 =  $88,000 \times 40\% (\text{가산세율}) = 35,200$
- 가산세 포함 세부담 =  $88,000 + 35,200 = 123,200$

○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·적발시 세부담 : 140,800원

- 가중된 가산세 =  $88,000 \times 60\% (\text{가산세율}) = 52,800$
-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=  $88,000 + 52,800 = 140,800$

[사례 2] 해외에 다녀오면서 3천달러\* 선물 구입

\* 술, 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

○ 자진신고시 세부담 : 378,000원

- 산출세액 =  $(3,000\$ - 600\$) \times 20\% (\text{간이세율}) \times 1,100 (\text{환율}) = 528,000$
- 공제액 =  $528,000 \times 30\% = 158,400 > 150,000 (\text{공제액})$
- 공제후 세부담 =  $528,000 - 150,000 = 378,000$

○ 미신고후 적발시 세부담 : 739,200원

- 가산세 =  $528,000 \times 40\% (\text{가산세율}) = 211,200$
- 가산세 포함 세부담 =  $528,000 + 211,200 = 739,200$

○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·적발시 세부담 : 844,800원

- 가중된 가산세 =  $528,000 \times 60\% (\text{가산세율}) = 316,800$
-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=  $528,000 + 316,800 = 844,800$

[참고자료 2] 가산세 부과 통계

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 분	2011	2012	2013	2014.11월
건 수	47,314	90,287	60,894	32,129
가산세액	579	1,197	2,102	1,380